의안번호	제 200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3년 3월 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 200 제출연월일: 2023년 3월 7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그동안 4차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·운영하였으나, 4차 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요 산업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「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「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 (안 본칙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(제외사유서 붙임)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- □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초연결·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 업·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도정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 - 1.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행계획과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
 - 3.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 2020.1.1.>
 - 1. 당연직 위원 : 기획관리실장, 신성장산업국장, 바이오산업국장
 - 2. 위촉직 위원 : 연구기관, 경제단체 및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 -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 - ⑤ 위원장은 필요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 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(後任)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- 제5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으며,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 - 2.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- 3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 - 4.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
 -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제6조(위원장·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에게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를 제안・기획・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 - 1.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,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-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9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·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0조(수당 등)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부칙(2018.4.6. 조례 제4153호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로 본다.
 -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차산 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 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.

부 칙(2020.1.1.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 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이하생략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- 첨부제외 관련규정
 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- 사 유
 -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 지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- 작성자 :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장 변인순